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45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박상혁 · 한민수 · 허영
이연희 · 문진석 · 박균택
박용갑 · 김영환 · 김주영
김용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3항 단서).

법률 제 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검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① · ② (생 략)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 어야 한다. 다만, 제58조부터 제 6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 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 하여야 <u>한다</u> .	③ ----- ----- ----- ----- ----- ----- ----- 하고, 검찰총장은 국가수 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u>한</u> <u>다</u> .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